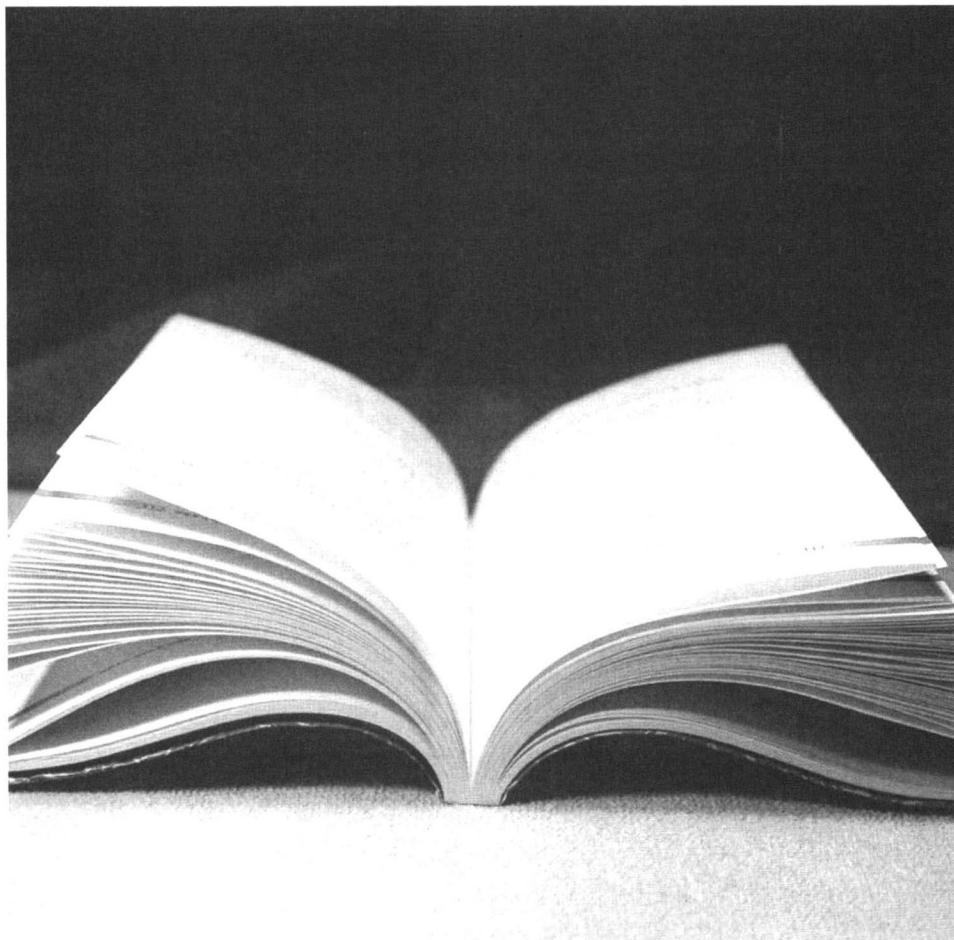
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(산업자원부고시제2005-26호, 2005.3.8)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. 관련고시를 게재한다.

산업자원부





① 산업자원부고시제2006-109호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(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26호, 2005. 3. 8.)
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합니다. 2006년10월31일
산업자원부장관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일부개정

□ 개정이유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(산업자원부령 제338호, 2006. 5. 3. 공포)의 개정에 따라, 동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

□ 주요내용

가. 강판제 방호벽 기초의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규정 명확화

- (1) 강판제 방호벽의 기초는 일체로된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에 대해서는 미규정
- (2)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강판제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.

나.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바닥 관련규제 완화 및 살수장치 관련기 명확화

- (1) 소형저장탱크 부식방지를 위해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그 바닥이 지면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된 곳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기초 부분만 지면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토록 하여 규제완화
- (2)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살수장치 설치기준을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살수장치 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규제를 명확히 함.

다.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상호 표시방법 간소화

- (1)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상호를 충전량 표시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 이외에 도색에 의한 상호표시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 불편초래
- (2) 도색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하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상호를 충전량 표시 스티커내에 표시되는 상호로 대체토록 하여 용기 상호표시방법 간소화